

#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순기 의원 발의]

의안번호	2489
------	------

발의일자 : 2024. 2. 2.

발 의 자 : 정순기 의원

찬 성 자 : 고성미, 엄샛별,  
장규권 의원

## 1. 제안이유

2018년부터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운영되었고, 2022년부터는 “금천구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됨.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명칭을 일치시키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변경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목적의 정비(안 제1조)

다. 센터의 명칭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변경(안 제2조 제1항)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9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 2) 입법예고: 2024. 2. 5. ~ 2024. 2.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금천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센터의 설치”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센터”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을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한다.

제3조제1항에 제7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천구의”를 “구의”로 한다.

7.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8.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9.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10.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11.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12.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1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1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을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으로, “이상 두어야”를 “이상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로 한다.

-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서 선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를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항은 「서울특별시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설치 및 위탁·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를 삭제한다.



따른다.

②센터 명칭은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기능) ①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②제1항의 기능 중 금천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② ----- 가족센터-----.

제3조(기능) ① -----.

1. ~ 6. (현행과 같음)

7.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8.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9.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10.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11.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12.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1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1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 구의 -----  
-----  
-----  
-----.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운영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생략)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9조(운영)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  
----- 이상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

제9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다만,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는 민간기관에서 선정한다.

③ -----  
-----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④ -----  
-----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현행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시행 2007. 12. 28.]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525호, 2007. 12. 28.,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센터 명칭은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기능)** ①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구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제1항의 기능 중 금천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①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운영팀 등 건강 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③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①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①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①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④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주민참여)** ①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또는 조사)**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525호, 2007.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조례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

##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80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4.] [여성가족부령 제192호, 2023. 8. 4., 일부개정]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7.>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81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5. 19.>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

##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8.>

[본조신설 2012. 7. 31.]